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종자중간육성 산업의 촉진을 위해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 (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안 제19조)

○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 (예시) 생산시설 유형별 허가제한·완화 기준 비교 >

<table>
<tr><td colspan="6">(현행) 허가 1개소</td><td colspan="6">(조건부 완화) 허가 2개소</td></tr>
<tr><td rowspan="2">사육수
공급시설
(필수시설)</td><td rowspan="2">생산
시설</td><td>수조1</td><td>2</td><td>3</td><td>4</td><td>5</td><td rowspan="2">사육수
공급시설
(필수시설)</td><td rowspan="2">생산
시설
1동</td><td>수조1</td><td>2</td><td>3</td><td rowspan="2">생산
시설
2동</td><td>수조A</td><td>B</td><td>C</td></tr>
<tr><td>6</td><td>7</td><td>8</td><td>9</td><td>10</td><td>4</td><td>5</td><td>6</td><td>D</td><td>E</td><td>F</td></tr>
<tr><td colspan="2">▪ 공동사용 제한</td><td colspan="4">▪ 1개의 생산시설에 수조가 함께 있는 경우 → 1개의 생산시설에 허가</td><td colspan="2">▪ 공동사용 조건부허용</td><td colspan="4">▪ 생산시설이 2개동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시설별로 수조가 있는 경우 → 생산시설별로 각각 허가</td></tr>
</table>

* (현행) 기존 허가받은 생산시설은 유효기간 중 다른 생산자에게 허가를 제한

** 공동사용 적정 여부는 행정청이 직접 확인·조사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관리할 계획

다.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안 제24조)

○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를 보완·정비

* (허가사항) 6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허가기간, 종자 종류, 시설물 종류·규모, 제한·조건) → (변경사항) 3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시설물 규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9. ~ 2025. 1. 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양수산부령 제 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이 별개의 생산시설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육수공급시설을 생산시설별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2.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3. 시설물의 규모

별표 3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산업 종류	생산 수산 종자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사이거리
6.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	1) 수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5% 이상 20% 이하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3) 관리사 설치 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0미터

별표 3 비고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후단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제2호 본문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나.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 가.·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

1.·2. (생 략) ② (생 략) 제19조(허가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허가의 제한) ① ----------. <후단 삭제> ----------. 다만,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이 별개의 생산시설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육수공급시설을 생산시설별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1. (생 략)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경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육수공급시

	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신 설>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2.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3. 시설물의 규모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③ 제2항----------

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제2항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